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기업소득세 자산손실자료 보존 비치**  **유관사항에 관한 공고**  국가세무총국공고 2018년 제15호  세무 시스템 ‘방관복(放管服: 번역자 주 - 정부기능 간소화, 권력이양 및 서비스 최적화)’ 개혁 심화, 기업 납세 신고자료 제출 간소화, 기업 세무처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기업소득세 자산손실자료 보존 비치 유관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  1. 기업은 세무기관에 자산손실을 공제 신고하고,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서 <자산손실 세전공제 및 납세조정 명세표>에만 작성하면 되며, 자산손실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. 관련 자료는 기업이 보존 비치한다.  2. 기업은 자산손실 관련 자료를 완전하게 보존하고, 자료의 진실성 및 합법성을 보증하여야 한다.  3. 본 공고 규정은 2017년도 및 이후 연도 기업소득세 결산 납부에 적용한다. <국가세무총국의 <기업자산손실 소득세 세전공제 관리방법> 발표에 관한 공고>(국가세무총국공고 2011년 제25호) 제4조, 제7조, 제8조 및 제13조 자산손실 관련 증거자료, 회계결산자료, 납세자료 등 관련 자료 제출의 내용은 동시에 폐지한다. 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.  국가세무총국  2018년 4월 10일 |  | **关于企业所得税资产损失资料留存备查有关事项的公告**  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15号  　　为了进一步深化税务系统“放管服”改革，简化企业纳税申报资料报送，减轻企业办税负担，现就企业所得税资产损失资料留存备查有关事项公告如下：  　　一、企业向税务机关申报扣除资产损失，仅需填报企业所得税年度纳税申报表《资产损失税前扣除及纳税调整明细表》，不再报送资产损失相关资料。相关资料由企业留存备查。  　　二、企业应当完整保存资产损失相关资料，保证资料的真实性、合法性。  　　三、本公告规定适用于2017年度及以后年度企业所得税汇算清缴。《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〈企业资产损失所得税税前扣除管理办法〉的公告》（国家税务总局公告2011年第25号）第四条、第七条、第八条、第十三条有关资产损失证据资料、会计核算资料、纳税资料等相关资料报送的内容同时废止。  　　特此公告。  国家税务总局  2018年4月10日 |